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	15-37
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투자심사 정의 규정(안 제2조)
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제2호의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

※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제2호

2. 시·군 및 자치구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
가.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

나.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

다.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·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

**나.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(안 제3조)**

-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
- 공무원 : 안전행정국장, 기획경제국장, 도시환경국장
- 민간위원 :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
-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
-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

**다.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(안 제4조)**

-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해당위원 참여 배제

**라.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와 서기를 정함(안 제5조 및 제7조)**

-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
-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 수행 곤란 시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
- 간사 : 기획예산과장, 서기 : 예산팀장

**마. 위원회 운영 및 자료제출·설명요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 및 제8조)**

- 투자심사 기능보완을 위해 분야별 사전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
-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 방문하거나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가능

**바.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(안 제9조)**

**4. 주요 토의과제**

없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의2 및 제32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「지방재정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5. 3. 12. ~ 4. 1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권고사항 있음

- 평가기준 : 접근성과 공개성

- 개선사항 : 위원회 업무처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,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

- 조치사항 : 권고사항 반영(안 제6조제2항 신설)

구청장 방침	심의회 상정안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  ②·③ (생략)	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(구청장 방침과 같음) <u>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참석위원 명단, 회의 안건과 심의·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</u> ③·④ (구청장 방침과 같음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투자심사”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제2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위원회 구성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공무원 : 안전행정국장, 기획경제국장, 도시환경국장
2. 민간위원 :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

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위원회 운영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참석위원 명단, 회의 안건과 심의·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투자심사 기능 보완을 위해 분야별 사전심사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사전심사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7조(간사와 서기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**제8조(자료제출 및 설명요구)** 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·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9조(수당과 여비)**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전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의2(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)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